

교육부장관 귀하
학 교 법 인 이사회 귀중
監 査 報 告 書

2019회계연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붙 임

1.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2.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입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 사무국장, 대학교 : 재무처장, 부속병원 :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이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 2003.2.25)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갈음함.

학 교 법 인 선 목 학 원
대 구 가 톨 릭 대 학 교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선목학원(대구가톨릭대학교)의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 2003. 2. 25)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선목학원(대구가톨릭대학교)의 재산상 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	-	1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	-	2	
4. 부속병원 관련	-	-	2	
계	-	-	5	

- 붙임 : 1. 학교법인 선목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0년 5 월 일

학교법인 선목학원

감 사 여 운 동

감 사 나 경 민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3098호)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0년 5 월 일

학교법인 선 목 학 원

이 사 장 조 환 결

피감사 기관장

2020년 5 월 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총 장 김 정 호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2019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0. 5.

학교법인 선 목 학 원

감 사 여 윤 동 (인)

감 사 나 경 민 (인)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 무 국 장

성 명 이 종 현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선목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일반업무회계] 1.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1) 법인의 교지 중 타인과 공유 지분이었던 월성동 199-24에 대하여 공유 지분에 대한 매입 및 임대료 지급 등의 소송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소송비용이 발생함 (2) 기본재산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파악하여 기본재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함 [수익사업회계] - 해당사항 없음 -	1.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기본재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기본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조 환 길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선목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대구가톨릭대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0. 5.

학교법인 선 목 학 원

감 사 여 윤 동

감 사 나 경 민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 무 처 장

성 명 류 지 현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별지 제1의2호 서식)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교비회계] 1.의과대학 연구비 집행계획 수립 (1) 의과대학 연구비 발생추이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평균적으로 약 38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결산종료월인 2020년 2월에 약 102백만원이 발생함 (2) 의과대학 예산액이 결산종료시점에 큰 금액이 집행됨. 배정된 예산의 사용을 위해 과다한 지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중 적절한 계획에 따라 예산 배정액을 집행할 것을 권고함 2.고정자산관리 철저 (1)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관리시스템상 물품취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 기계및비품 취득원가의 금액이 상이함 (2)회계팀은 시설관리팀으로 수령한 자료를 통하여 유형자산의 취득 및 폐기 등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의 금액과 전산상의 금액을 일치시켜야함	1.의과대학 연구비 집행계획 수립 의과대학 연구비 집행 금액의 확인 결과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결산 종료 시점에 교내연구비가 과다 발생하였음이 확인됨 의과학연구소에서는 의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사용에 관한 자체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서 매월 계획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결산종료시점에 집중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연구비 수혜 교수님들께 지속적인 메일 고지를 통하여 분산 사용을 독려 할 계획임 2.고정자산관리 철저 2019학년도 시점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유형고정자산 품목과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유형고정자산관리시스템과 대조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원인을 찾아 시스템을 정비하여 항상 일치하도록 조치하겠음
피감사기관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총 장 김 정 우	직인 (서인)

(교비회계 · 부속병원 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부속병원회계] 1.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1) 병원의 장애인고용 미달로 인한 발생 금액으로 해당 금액은 병원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2) 대구 및 칠곡 가톨릭병원의 고용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2. 고정자산 관리 철저 (1) 물류자산팀의 고정자산 관리대장 중 폐기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기구비품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 됨. 폐기된 자산 등은 고정자산 관리대장에서 제거하고 실제 사용 중인 자산에 대해서만 리스트업 할 것을 권고함. 또한 해당 작업을 통해 상각되어지는 목록을 따로 관리하여 물류자산팀의 고정자산 대장과 재무팀의 고정자산 대장을 일치시키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추가로 의료장비에 대한 재물조사 관련 서류도 비치해 둘 것을 권고	1.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의료원 내 근무 부서에서의 업무가 가능한 영역과 채용자 업무역량 요청 수준을 각 부서별로 파악하여 장애인학교, 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고정자산 관리 철저 현재 진행 중인 공기구 비품의 재물조사는 2020년 완료할 계획이며, 재물조사 후 폐기된 자산 등은 전산 관리 대장에서 폐기 처리할 계획임 감가상각 대상 공기구 비품도 따로 관리하여 재무팀의 고정자산 상각 대장과 일치시킬 예정임 장비 관련 재물조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는 상시 비치하겠음
피감사기관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총 장 김 정 우	직인 (서인) 

(교비회계 · 부속병원 회계)